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8870

제안연월일: 2025. 3.

제 안 자: 보건복지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다음 2건의 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건 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전체회의 상정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6550	백혜련의원	2024. 12. 17.	2025. 2. 18.
	6632	백혜련의원	2024. 12. 18.	2025. 2. 18.

- 나.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 심사제1소위원회(2025. 2. 19.)에서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 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다.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2025. 2. 21.)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하여, 개정 전「사회복지사업법」의 조항을 인용하면서 부칙을 통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조항을 직접 인용하도록 함(안 제11조제1호).

또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배분 업무를 관장하므로, 횡령 등 재산범죄를 저지른 자는 보다 엄격하게 임원 자격을 제한하도록 함(안 제11조제3호 신설).

한편, 「사회복지사업법」제48조에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 조항은 압류금지에 대한 포괄적 규정으로 볼 수 있고, 개인 사유로 인하여 계좌가 압류되어 있는 자의 경우 배분 금품의 압류를 우려하여 주민센터 계좌를 동원하여 지원을 신청하는 등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개별 법률에서 압류금지에 관한 내용을 별도로 명시할 필요가 있고, 당초 권리를 부여한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될 여 지를 배제하기 위하여 권리의 양도 및 담보 제공 금지 등의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안 제24조의2 신설).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조항을 직접 인용하도록 하고(안 제11조제1호), 형법 제347조, 제350조, 제351조(제347조 및 제350조의 상습범만 해당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로 규정함(안 제11조제3호신설).
- 나. 배분대상자에게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함(안 제24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9까지, 제2호 및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3. 「형법」 제347조, 제350조 또는 제351조(제347조 및 제350조의 상습범만 해당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압류금지) 배분대상자에게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24조의2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임원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11조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은 모금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	1.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제1항제1호, 제1호의2부터 제
당하는 사람	<u>1호의9까지, 제2호 및 제2호</u>
	의2부터 제2호의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u><신 설></u>	3. 「형법」 제347조, 제350조
	<u>또는 제351조(제347조 및 제3</u>
	50조의 상습범만 해당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
	<u>나지 아니한 사람</u>
<u><신 설></u>	제24조의2(압류금지) 배분대상자
	에게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